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하는 일

재해복구공제사업

1.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대상

- 건물 :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일체
- 시설물 : 공제등록건물내에 있는 재산가액 100만원 이상의 시설
 - ☞ 자동차, 자전거등 기동성이 있는 것과 박물관·전시관등의 전시품 및 동식물류는 등록 대상이 아님
- 신채손해
 - ▶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건물

■ 공제등록 회비

- 건물 : 용도·구조별의 등록구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시설물 : 시설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채손해 : 당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화재, 풍·수·설해 및 건물의 자연도괴·붕괴로 인한 손해
 - ▶ 건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 ☞ 전쟁, 방화, 지진등으로 인한 손해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
 - ▶ 건물 재해복구비 : 등록구분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시설물 재해복구비 : 등록재산가액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신채손해 보상비 : 상해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사업특징

- 손해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40%저렴함
- 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 확대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2.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선박 일체

■ 공제등록 회비

- 선박공제 : 선령 및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
- 충돌공제 : 당해 선박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무사고 할인 : 당해 선박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선박공제 회비를 3~10% 할인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침몰, 좌초, 충돌, 풍파에 의한 손해
 - ▶ 행방불명으로 인한 손해
 - ▶ 피격, 나포, 천재지변, 고의 등에 의한 손해는 제외
- 지급기준
 - ▶ 전부 손해 : 등록선박의 재산가 전액 지급
 - ▶ 부분 손해 : 등록선박의 수리비 전액 지급

■ 사업특징

- 시중선박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30%이상 저렴
- 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 확대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공공청사 정비사업

● 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정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청사를 신·증축할 경우 소요재원을 대여·지원하는 사업임

● 제도운영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액 (신축)

(단위: 억원)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신축 · 매입	시·도 청사	718	신축 · 매입	보건소		16
	시·군·구 청사	166		사업소	시·도	25
	읍·면·동 청사	10			시·군·구	15
	시·군·구민회관 (문예 스포츠, 여성 장애인 등)	77		증축	시·도 청사	75
	공무원 교육원	75	시·군·구 청사		15	
	벤처기업 지원센터	56	읍·면·동 청사		1	
	소방서(파출소)	20(3)	기타 청사		5	

※ 청사유형별 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은 당해 건축비 소요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지원금 상환 :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일시상환 가능)
- 특별회비 납부 : 거치기간 이후부터 상환잔액의 3%(연리)

■ 지원방법 : 2회 분할지원

- 착공시 50%, 기성시(공정율 50% 이상인 경우) 50%

손해배상공제사업

1.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구분

- 일반등록 : 청사, 복지·숙박·환경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해수욕장 등
- 특별등록 : 도로, 주차장, 구내치료, 물적손해, 생산물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대상임
-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을 등록대상으로 함

■ 공제등록 회비

- 당해시설의 연면적, 수용인원과 대인·대물을 기준으로 산정
- 도로의 경우는 도로구분에 따른 Km당 적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손해배상금 지급

- 배상금 지급범위
 -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 및 대위권변제 비용 ▶ 소송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한도
 - ▶ 대인사고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최대 100억원 /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5억원
 - ▶ 대물사고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최대 100억원
 - ▶ 청소년수련시설 - 1인당 최소 8천만원, 최대 3억원 / 1사고당 무한대

■ 사업특징

- 손해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최대 58%저렴하고
- 본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을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는 배상금지급에 대한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업무 손해배상공제사업

● 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발급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본회가 대신 배상하는 사업임

● 보상하는 손해

- 가) 법률상 손해배상금
- 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다)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 라)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 마)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등 기타비용

● 공제등록 방법 및 기간

- 공제등록 신청서 작성, 시·도지부 또는 본회 제출(전년도 12.20까지)
- 정가등록기간 : 매년 1. 1 ~ 12.31까지
- 수사등록기간 :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2.31까지

● 공제회비 요율

- 기본회비 : 40,900원
- 조정계수 : 할인·할증률
- 자치단체별 과거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13~40%), 할증률(5~100%) 적용
- 회비산출 = 기본회비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조정계수 × 특별할인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구 분		1청구 당 보상 한도액 (1인당)					
		0.5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연간 총 보상 한도액 (1인당)	1억원	1.00	1.87				
	2 "	1.14	2.07	3.52			
	3 "	1.25	2.27	3.81	4.94		
	4 "		2.46	4.08	5.15	6.17	
	5 "		2.64	4.33	5.34	6.19	7.06
	7.5 "			4.56	5.50	6.44	7.38
	10 "			4.77	5.63	6.49	7.45
	15 "				5.73	6.82	7.70

※ 1청구당 보상한도액 4억, 5억원을 추가 상향조정하여 '05.1.1일부터 적용.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地方財政**」지는 지방재정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교양지가 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과 기타 문예·체험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리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연구논문

지방재정제도의 발전 및 개선의견

－ 지방재정제도 운영사례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관련 특수 시책 운영의 성공·실패사례

－ 시·수필·칼럼 등

일상생활속에서 느낀 보람이나 어려움, 해당지역 소식 등

●보낼 곳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e-mail : gregori61@hanmail.net

※「**地方財政**」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地方財政

2005년 제5호

(통권 제 136호)

발행인 조 기 안

편집인

서덕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기획관

편집위원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김홍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김종순/ 건국대학교 교수

문병근/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안세경/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송영철/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정종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김진영/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11

(행정) 1990-5383, 5384

발행일 2005년 10월 31일